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11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2일, 고영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
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 가. 제안이유

○ 재개발·재건축 등에 따른 빈번한 공사로 인하여, 안전사고는 물론 다양한 환경 위해 요소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. 이에 따라 공사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 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공사장 안전관리와 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(안 제3조 및 제4조)
- 3)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(안 제5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○ 본 조례안은 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,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하고자 의원발의됨.

#### 2) 주요 내용

- 가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  - "학교 주변 공사장"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정의함.
  - "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"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정의함.
  - 공사장의 규모를 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 정한 것은 관내의 소형공사장은 제외하고 중·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.

# ※금천구 공사장 현황 구분 대형 건축공사장 (10,000㎡이상) 중형 건축공사장 (2,000㎡고과~10,000㎡미만) 소형 건축공사장 (2,000㎡미만) 개소 10 12 16

구분	행정동	연면적	착공일	지상층	지하층	용도
중형 (12개소)	가산동	2,755.35	2021-11-16	16	2	업무시설
	독산1동	6,040.21	2022-07-18	16	2	업무시설
	독산1동	3,956.17	2021-12-14	11	1	업무시설
	독산1동	2,067.90	2023-10-20	8	2	업무시설
	독산1동	2,648.455	2024-10-04	13	1	업무시설
	독산1동	6,293.96	2024-09-24	8	2	공장
	독산3동	3,182.89	2023-03-22	5	2	업무시설
	독산3동	2,174.73	2021-04-09	11	1	업무시설
	독산4동	7,277.24	2024-07-04	17	2	공동주택
	시흥1동	3,762.32	2022-12-28	13	2	업무시설
	시흥1동	2,794.62	2023-02-01	16	1	업무시설
	시흥5동	4,467.05	2023-11-15	5	0	공동주택
대형 (10개소)	가산동	36,518.35	2022-06-14	10	5	방송통신시설
	가산동	39,589.65	2022-12-08	10	2	방송통신시설
	가산동	15,415.43	2022-10-12	15	4	공장
	가산동	41,310.37	2022-09-05	11	3	방송통신시설
	가산동	58,445.66	2022-10-25	20	5	공장
	가산동	17,422.83	2023-04-25	8	1	방송통신시설
	가산동	29,248.34	2023-05-30	15	4	공장
	시흥1동	11,080.58	2021-01-22	20	4	공동주택
	시흥1동	21,346.60	2023-10-27	6	2	자동차관련시설
	시흥1동	13,269.34	2023-10-04	20	4	공동주택

- 나) 공사장 안전관리와 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(안 제3조 및 제4조)
  - 건축관계자는 「건축법」 및 「건설기술 진흥법」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.
  -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축관계자에게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.
- 다)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(안 제5조)
  - 구청장이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# 3)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.

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 략

**5. 토론요지**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